창원시의회 공고 제2020 - 39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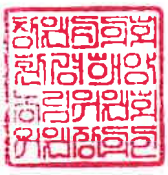
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 공고

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 신조 공인 및 제11조 폐기 공인 등록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7. 1.

창 원 시 의 회 의 장 

1.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 사유 : **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**
2. 최초 사용 및 폐기 일자 : **2020. 7. 1.**
3. 신조 및 폐기 공인 인영

신조공인		**폐기공인**	
공인명	인영	공인명	인영
창 원 시 의 회 **문화환경도시위원회** 위 원 장 인		창 원 시 의 회 **환경해양농림위원회** 위 원 장 인	
창 원 시 의 회 **건설해양농림위원회** 위 원 장 인		창 원 시 의 회 **문화도시건설위원회** 위 원 장 인	